

내부고발(신고) 대상 범죄는?



고위공직자 범죄

•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아래 세부사항에 해당하는 죄

-다만, 가족의 경우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죄에 한정

*가족이란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말하고 다만, 대통령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공수처법 제2조제2호)

① 「형법」제122조~제133조까지의 죄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 포함)

직무유기 (형법 제122조)	직권남용 (형법 제123조)	불법체포, 불법감금 (형법 제124조)	폭행, 가혹행위 (형법 제125조)
피의사실공표 (형법 제126조)	공무상 비밀의 누설 (형법 제127조)	선거방해 (형법 제128조)	수뢰, 사전수뢰 (형법 제129조)
제삼자뇌물제공 (형법 제130조)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형법 제131조)	알선수뢰 (형법 제132조)	뇌물공여등 (형법 제133조)

② 직무와 관련되는 「형법」제141조 등의 죄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 포함)

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형법 제141조)	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형법 제225조)	허위공문서작성등 (형법 제227조)
전자기록위작·변작 (형법 제227조의2)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형법 제229조)	횡령, 배임 (형법 제355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형법 제356조)	배임수증재 (형법 제357조)	횡령, 배임, 배임수증재의 미수 (형법 제359조)

③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알선수재)의 죄

④ 「변호사법」제111조(벌칙)의 죄

※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알선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를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할 것을 약속한 자

⑤ 「정치자금법」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의 죄

⑥ 「국가정보원법」제21조(정치 관여죄) 및 제22조(직권남용죄)의 죄

⑦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위증 등의 죄)의 죄

⑧ 제 ①부터 ⑦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 범죄수익과 관련된 같은 법 제3조(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및 제4조(범죄수익등의 수수)의 죄

관련범죄



• 「고위공직자가 아닌 자가 고위공직자와 함께 고위공직자

대상범죄 등을 저지른 경우

- ① 고위공직자와 「형법」제30조~제32조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가 범한 고위공직자 범죄
- ②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한 자의 「형법」제133조, 제357조제2항의 죄
- ③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된 「형법」제151조제1항, 제152조, 제154조~제156조까지의 죄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의 죄

범인은닉
(형법 제151조제1항)

위증, 모해위증
(형법 제152조)

허의의 감정, 통역, 번역
(형법 제154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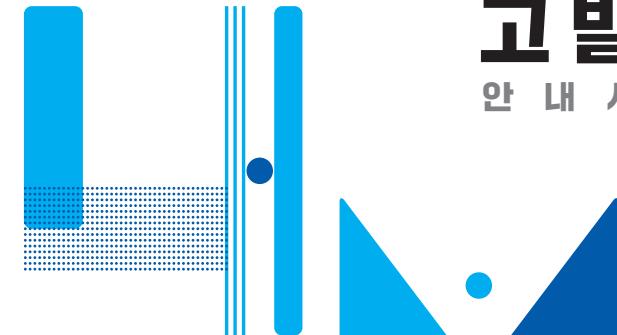
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형법 제155조)

무고
(형법 제156조)

위증 등의 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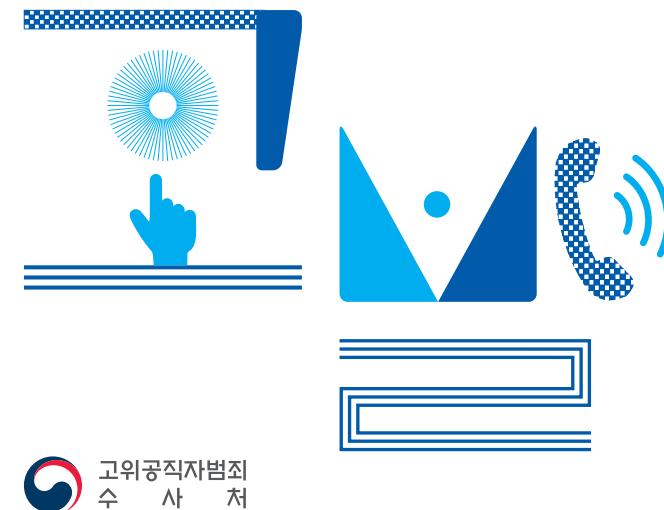
- ④ 고위공직자범죄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

내부 고 발 안 내 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이 범한 직권남용, 수뢰, 허위공문서 작성 및 정치자금 부정수수 등의 특정범죄를 척결하고, 공직사회의 특혜와 비리를 근절하여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임으로서, 국민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왜 내부고발이 필요할까요?

- 고위공직자범죄는 그 실체가 조직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음
- 외부 수사기관보다 조직내부 구성원들이 먼저 인지할 가능성이 높음
- 그러나, 내부고발(신고) 대상이 고위공직자로서 신고자의 신분노출 및 보복의 우려가 높아 신고를 망설임



- 내부고발자의 신원 보장 등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 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내부고발 활성화를 통한 공직사회 신뢰도 제고

적용대상 고위공직자는?

- 대통령
- 대법원장 및 대법관
-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공무원
-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무직공무원
-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장성급 장교
- 감사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
-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 대법원장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의 정무직 공무원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 금융감독원 원장·부원장·감사

내부고발(신고) 및 처리절차는?

내부고발(신고)자란?



- 다음 ①~④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신고한 자
- ①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저지른 사람이 속하거나 속하였던 기관·법인·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
- ②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저지른 사람이 속하거나 속하였던 기관·법인·단체 등과 협약·계약 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
- ③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저지른 사람이 속하거나 속하였던 기관·법인·단체 등의 지도 또는 관리·감독을 받는 사람으로서 불이익한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사람
- ④ 그 밖에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저지른 사람의 기관·법인·단체 등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고위공직자범죄등 신고로 인하여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사람 등 내부고발자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된 자

신고 및 처리



신고서 제출 (내부고발자)

- ①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 기재
- ② 고위공직자범죄등 행위를 한 자
- ③ 고위공직자범죄 등의 내용
- ④ 내부고발의 취지와 이유 등을 기재

접수·인계 (사건관리 담당관등)

- ① 신고자 기재사항 및 신고내용 등 확인
- ② 내부고발 신고서 접수
- ③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
- ④ 필요시 보완 요구
- ⑤ 접수증을 내부고발자에게 교부
- ⑥ 해당 신고사건 기록을 수사처검사에게 인계
- ① 고위공직자범죄등이 아닌 것 이 명백한 경우 일반민원으로 처리
- ② 특정사건과 관련 없는 청원 또는 정책건의 내용 문건은 수사처 수리등 사건으로 접수하지 않고, 운영지원담당관에게 인계

분석·검토 (수사처검사)

-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으로부터 신고사건 기록 인수
- ② 기초조사를 통해 사건의 수사 필요성 등 분석·검토

사건종결 (수사처검사)

- ① 사건의 종결은 공소제기, 공소제기요구, 불기소, 기소중지·참고인증지, 이첩 등으로 결정
- * 단, 1건으로 접수한 사건 중 피의자가 수인이거나 피의사실이 수개로 분리 필요시 일부에 대해 분리결정 가능

결과통지 (사건사무 담당직원)

- ① 처리결과를 고소인·고발인·진정인 등에게 통지

내부고발자는 어떻게 보호하나요?

보호·지원 사항



보호

비밀보호

- 내부고발(신고)자
비밀보호(인적사항,
주소, 직업 등)

신변보호

- 내부고발(신고)자와
협조자, 그 친족과
동거인 등

신분보호(책임감면)

- 내부고발자 및
협조자 대상

지원

포상금

- 내부고발로 인해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 집행유예,
형의선고 등을 받을 경우
포상금 지급

구조금

- 내부고발자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내부고발로 인해
경제적 손실 또는 정신적 고통
등을 받았을 경우 지급

신고 및 처리



신고서 제출 (신청인)

- ① 신분공개경위 확인
② 신변안전조치 신청
- ③ 의견제시 신청
(징계·행정처분 김경 또는 면제)

접수 (책임관)

- ① 접수
처리부 기재
- ② 접수증 교부

조사·확인 (책임관)

- ① 관련자 등
조사·확인
(자료제출,
출석, 진술청취,
진술서 제출 등)
- ② 조사결과 보고

보호결정 (처장)

- ① 보호결정 확정
- ② 보호조치

포상금 구조금

- 신분보호
(책임감면)

신변보호

- 신변보호

비밀보호